

3. 소 송 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원본채권의 일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¹¹⁵⁾ 이자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도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인정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양론이 있을 수 있으나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는 원물에 상응하는 것은 가액배상 원금이라 할 것이고

11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따라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부정적으로 봄이 타당하다.¹¹⁶⁾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 청구를 유보하고 그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미친다.¹¹⁷⁾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패소 확정판결이 있는 후 원고가 지연손해금 청구를 한 경우, 그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원금에 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나, 변론종결 당일까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¹¹⁸⁾

116) 同旨 윤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저스티스 34권 5호(2001), 한국법학원, 162면.

117)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1283 판결(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약속어음 2장의 액면 합계금 1,1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0. 5. 17. 금 1,150만 원과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2000. 4. 경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5. 26. 금 1,150만 원과 2000. 4. 9.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원고가 위 2차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일부 청구를 유보하고 그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2차 소송에서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 2차 소송 당시에 누락하였던 2000. 4. 8. 이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118)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119)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原審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하여 “2001.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단지 2003. 4. 24.자 위헌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기간을 2003. 6. 1. 이후로, 적용이율을 연 20%로 정리하고, 2003. 5. 31.까지는 위 특별법에 정해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약정이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진술하려던 것을 착오로 민법에 정하여진 법정이율인 연 5%라고 잘못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국판결 선고 후의 소취하로 인한 재소금지의 효과까지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 소송행위라고는 보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비율 그대로 인정하여 연 18%를 적용한 데 대하여, 大法院은, “수량적으로 가본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며,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착오로 소의 일부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위 기일에 출석한 피고들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청구는 청구감축에 따라 소의 일부 취하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